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3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 ----- ----- ----- ----- ----- -----.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 -----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 -----

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

② -----

-----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
-----.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

<신 설>

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
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
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239